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

(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276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
발의자: 최호정, 강석주, 구미경,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박춘선, 신복자, 심미경,
오금란, 유만희, 이병윤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
이종환, 이희원, 임춘대,
채수지, 최민규, 홍국표,
황유정, 황철규 의원(32
명)

1. 주문

-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권과 재정 형평성 회복을 위해,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의 불합리한 차등 구조를 시정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재량권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함.
- 국회와 정부는 헌법상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따라, 서울특별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2항 제3호를 개정하여 재정력 및 교육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차등 원칙을 새롭게 확립하고, 아울러 시·도별 교육 환경 변화에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임.

2. 제안이유

- 현행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특별시에만 시세 총액의 10%라는 과도한 법정 전출금 비율을 부과하여, 광역시·경기도(5%) 및 기타 도(3.6%)와 비교해 현저한 재정적 차별을 고착시키고 있음. 또한, 목적의 정당성을 잃고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(헌법 제37조 제2항)에도 어긋남.
- 현행법의 불합리한 차등 구조에 더하여, 서울시는 국비보조사업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음. 최근 민생소비쿠폰 사업에서 타 시·도가 90%의 국비보조율을 적용받은 반면, 서울시는 75%의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.
- 따라서 서울특별시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10% 의무 전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, 대신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재정력과 교육수요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한 합리적 차등 원칙을 적용하고,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환경에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전출 비율을 조정할 자치입법 재량권을 신설해야 할 것임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
「대한민국헌법」 제11조, 제37조 제2항, 제117조, 제118조

4. 이송처

- 가. 국회
- 나. 정부 (기획재정부, 교육부, 행정안전부)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

현행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%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하여, 광역시·경기(5%) 및 기타 도(3.6%)와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 격차를 고정하고 있다. 이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구조적 문제이다.

헌법(제117·118조)은 지방자치와 자치재정의 본질을 보장하며, 입법은 비례와 평등을 따라야 한다. 서울고등법원(2012. 2. 22.) 판례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과중·차별적 부담은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.

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실증적 재정 환경은 이미 완전히 변화하였다. 2025년 기준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.032로 경기도(1.180)보다 낮고,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.1%, 경기 35.3%로 큰 격차를 보인다. 반면 재정수요는 서울이 21.2%로 경기(18.3%)를 상회하여, 서울이 더 이상 과거의 재정 우위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(민생소비쿠폰)에서 타 시·도(90%)보다 낮은 75%의 보조율을 적용받는 등 국비보조율 차등으로 서울은 경기도보다 매년 4조 원 이상을 더 부담하고 있으며, 이는 단순한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다. 현행 차등 구조는 이처럼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.

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권과 재정 형평성 회복을 위해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며 다음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.

첫째, 현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%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를 즉시 폐지하고, 합리적 차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. 특정 광역자치단체에만 과도한 부담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폐지하고,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재정력 및 교육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차등 전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.

둘째, 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 재량권을 확보해야 한다. 시·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자치입법 재량권(±20% 가감 조항)을 신설해야 한다.

이러한 개정은 현법 합치, 동일 급 단체 간 형평 회복, 재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, 그리고 국비 차등보조의 왜곡을 바로잡아 중앙–지방 간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. 개정 건의의 내용이 헌법 가치, 지방분권,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여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.

2025년 8월

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일 동